어선법 시행령

[시행 2017.3.30.] [대통령령 제27960호, 2017.3.27., 타법개정]
해양수산부 (어선정책팀) 044 - 200 - 5523, 5524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어선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6.25.>

제2조(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「어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때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·채권금액·촉탁기관·촉탁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,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7.3.27.>
[본조신설 2008.6.25.]

제3조 삭제 <1999.4.7.>

제4조(직권등록말소의 예외)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·신고·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「수산업법」·「원양산업발전법」 및 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. <개정 1999.4.7., 2002.6.3., 2008.6.25., 2017.3.27.>

제5조 삭제 <1998.7.1.>

제6조 삭제 <1998.7.1.>

제7조 삭제 <1998.7.1.>

제8조 삭제 <1998.7.1.>

제9조 삭제 <1998.7.1.>

제10조 삭제 <1998.7.1.>

제11조 삭제 <1999.4.7.>

제12조 삭제 <1999.4.7.>

제13조 삭제 <1999.4.7.>

제14조 삭제 <1999.4.7.>

제15조 삭제 <1999.4.7.>

제16조 삭제 <1999.4.7.>

제17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

[본조신설 2017.3.27.]

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12.9.]

제1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[전문개정 2008.6.25.]